

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8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필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에 따라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)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 반영(안 제26조, 제27조)

- 상위 법령에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조례에 중복 조항 정비

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정의 등을 반영

다.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필수 위임조례 규정 신설(안 제28조, 제67조)

- 초지 대부료 요율 신설

-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
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, 「초지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”으로, “따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”를 “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”로 한다.

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「초지법」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(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)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.

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제68조 및 제69조로 하고,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7조(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)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작성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~ ④ (생략) ⑤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</u> 의 임기 <u>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 ⑥ (생략)	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위촉직 위원</u> 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. ⑥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<u>영 제9조제1항제4호, 제23조제2 호, 제32조제3항, 제38조제1항 제25호,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</u> 규정의 외국인투 자기업의 범위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을 준용한다.	<삭 제>
제27조 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·매각 대상 등) <u>제26조의 규 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(이하 “외 국인투자기업 등”이라 한다)</u> 에 대부·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	제27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·매각 대상 등)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----- ----- 따른 외국인투자환 경 개선시설 운영자----- ----- -----

제67조 · 제68조 (생략)

제68조 · 제69조 (현행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92조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의2(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.

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2. 국유·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3. 그 밖에 지방재정, 부동산,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

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~ 3. 생략

4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"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이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삭제 <2018.1.9.>

5. ~ 11. 생략

② 생략

제23조(일반재산의 사권 설정)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(私權)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(地上權)

을 설정하는 경우

2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"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

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
1. ~ 24. 생략

25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삭제 <2018.1.9.>

26. ~ 33. 생략

② 생략

□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4. 생략

5. "외국투자가"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.

6. "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"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

7. "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"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
8. ~ 10. 생략

② 생략

□ 「초지법」

제17조(국유지·공유지의 대부) ① 국유지·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,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.

② ~ ⑥ 생략

제18조(국유지·공유지의 대부료)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·공유지의 대부료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(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)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,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1. ~ 4. 생략

5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
6. ~ 16. 생략

② ~ ⑥ 생략

소관 실·과		회 계 과
입 안 자	과 장	이 관 응
	담 당	이 재 균
	담 당 자	전 유 향 (480-5072)